

< '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안내 >

Q. '20년 청년공제 신규 가입인원은?

- 전체 13만 2천명 중 2년형은 12만 2천명이며 3년형은 1만명임
- 3년형은 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뿌리산업'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

* 2년형은 '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함 (변경 없음)

Q. 3년형에 가입할 수 있는 '뿌리산업'은 어떤 산업이며 뿌리기업 확인방법은?
신규 취업 시 직종에 관계없이 '뿌리산업'에 취업하면 가능한 것인지?

- '뿌리산업'은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(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)을 말함
- 뿌리기업은 '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'에서 발급해주는 '뿌리기업 확인서'로 확인이 가능하며,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'뿌리기술 전문기업'의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 없이도 가능함
- 근로자의 취업한 직종(사무직, 생산직)은 무관함

Q. '19년 하반기 취업자 중 '20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?

- '19.7.1.이후 정규직으로 취업(전환)한 경우에 가능

Q. '20년 청년공제 가입 희망자는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?

<취업일자별 신청기간>

정규직 취업(전환)일자	2019년 하반기 취업자			20.1.1.이후 취업자
	7.1~7.31	8.1~9.30	10.1~12.31	
① 청년공제 참여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20.1.1~	20.1.1~	20.2.1.~	20.2.1.~
② 자격심사(운영기관)	20.1.1~1.30			
③ 증진공 청약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20.1.1~1.31	정규직 취업일(전환일)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		

- (참여신청) '20.1.1부터 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가능하며,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

- (자격심사)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

* 또한,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증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

- (청약신청) 자격심사가 끝나면 청년·기업은 증진공 청약홈페이지 (www.sbcplan.or.kr)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함

Q. 중견기업의 '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' 기준과 확인방법은?

- '20년 가입자(신청자)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만 가능함
- 매출액 확인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'표준재무제표증명원'의 3개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, 결산일은 '중견기업확인서'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

*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→ 표준손익계산서 →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

* (예시1) '19.10.1.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'19.04.01.~'20.3.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'18.12월임

→ 따라서, '18~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

(예시2) '20.3.1.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'19.04.01.~'20.3.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'18.12월임

→ 따라서, '18~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

(예시3) '20.5.1.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'20.04.01.~'21.3.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'19.12월임

→ 따라서, '19~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

* (참고)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

-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,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에만 발급 가능

(예시) '18. 12. 결산 → 유효기간 '19. 04. 01. ~ '20. 03. 31.

'19. 03. 결산 → 유효기간 '19. 07. 01. ~ '20. 06. 30.

'19. 06. 결산 → 유효기간 '19. 10. 01 ~ '20. 09. 30.

Q. '20년 참여자부터 가입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은?

- '20년 참여자부터 청년공제는 정규직 취업일(전환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
 - * 가입 절차 : ①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 참여 신청(청년·기업 모두) →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(통상 10영업일) → ③중진공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 청약 신청(청년·기업 모두) → ④기업의 지원금 신청(2년형은 5회,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) → ⑤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(고용센터, 매회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)
- 다만, '20년 1월 초는 동시신청 및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'19년 7.1~7.31까지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만 '20.1.31까지 청약신청을 하도록 함

Q. '20년부터 임금상한액이 월 350만원으로 하향되었는데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확인방법은?
또한, 350만원을 초과 여부는 확인기간 및 초과 시 처리방법은?

- 정규직 입사일(전환일)로부터 1년간 근무한 대가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의미함
 - 포함되는 항목에는 기본급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, 상여금 및 성과금 등도 모두 해당됨

예시) '19.12.1. 정규직 입사일이고, '20.2.5 청년공제의 승낙이 처리된 경우 청년공제 가입일은 '20.2.5 임. 이런 경우 임금상한액 확인기간은 '19.12.1~ '20.11.31(1년 근무기간)까지 임

- 입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 2,100만원(350만×6월) 또는 1년간 근무하고 지급받은 금품 총액이 4,200만원(350만원×12월) 초과 시 청약 철회함

Q.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'20년부터 공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기준은?

- '20년 참여기업부터는 사업 개시일 이전 '1년 이내 임금 체불* 로 3회 이상' 근로감독관이 "기소"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은 청년공제 참여가 제한됨

* 최저임금법 제6조, 근로기준법 제26조, 제36조, 제43조

** '20년은 '18.12.1~19.11.30사이 '기소'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이 해당

-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